

창업보육센터운영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동명대학교 창업보육센터(이하 “본센터”라 한다)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1.27.)

제2조(정의) ①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주자’라 함은 본 센터와 입주계약을 맺고 기술개발 또는 시제품 제작을 추진하고 있는 창업자 및 예비창업자를 말한다.
2. ‘졸업’이라 함은 입주자가 본 센터 지원에 의하여 당초 계획한 기술개발 또는 시제품제작 등을 완료함으로써 자립경영 기반이 구축되어 독립이 가능하게 되거나 입주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취소하는 것을 말한다.
3. ‘퇴거’라 함은 사업전망이 불투명하거나 입주계약 위반 등으로 계약 만료일 이전에 본 센터에 의하거나 또는 입주자 스스로 본 센터를 취소하는 것을 말한다.
4. ‘입주일’이라 함은 입주 계약서상에 명기된 입주일을 말한다.

제3조(센터의 임무) 본 센터의 임무는 예비창업자 및 벤처기업 육성을 목적으로 본 센터에 입주한 자를 위하여 기술지도, 종합상담서비스, 사업지원, 연구시설 및 장비사용, 공동 사무기기 등을 제공하고 정부정책자금, 벤처캐피탈 등 자금·기술 등을 알선하여 건실한 벤처기업으로 육성시켜 지역경제 발전의 전진기지로서의 역할을 수행함에 있다.

제 2 장 조직 및 운영

제4조(조직) ① 본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직제와 기구로 구성할 수 있다.(개정 2017.11.27.)

1. 센터장
2. 창업지원실
3. 삭제(2017.11.27.)
4. 운영위원회

제5조(센터장 및 매니저) ① 센터장은 부교수 이상의 동명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 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7.11.27.)

- ② 센터장은 본 센터를 대표하고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 ③ 센터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7.11.27.)
- ④ 본 센터에는 창업보육을 전담하는 매니저를 1명이상 두어야 하며, 매니저는 입주자의 자금

유치, 판로 확보, 기술개발 등 각종 사업활동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창업성공률을 제고하여야 한다.(개정 2015.3.1.)

- ⑤ 매니저에게는 중소기업청 평가등급에 따른 성과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5.3.1.)
[본조 제목 개정 2015.3.1.]

제6조(창업지원실) ① 창업지원실은 본 센터의 창업보육과 관련한 행정지원, 기술 및 교육지원, 창업 및 사업화 지원, 시스템 운영지원에 관련한 업무를 수행한다.

- ② 창업지원실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약간의 정규 및 계약직 직원으로 구성된 전담매니저와 행정지원팀장 등 부문별 팀장을 둘 수 있다.

제7조(자문위원회) 삭제(2017.11.27.)

제8조(운영위원회) ① 본 센터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위원회는 본 대학교 교직원 및 외부전문가 12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센터장이 위촉한다.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7.11.27.)

③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개정 2017.11.27.)

1. 기본운영계획 및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2. 삭제(2017.11.27.)
3. 입주업체의 선정 및 연장에 대한 심사(개정 2017.11.27.)
4. 삭제(2017.11.27)
5. 기타 본 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④ 삭제(2017.11.27)

제9조(사업) ① 본 센터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산업 및 기술정보 서비스 제공
2. 기술 및 경영지도 서비스 제공
3. 기술개발 자금·창업자금 지원 및 알선
4. 입주시설 및 연구장비 지원
5. 연구개발 및 산·학·연 공동연구 지원
6. 대외 홍보 및 마케팅 지원
7. 사업계획 분석 및 평가 지원
8. 기타 창업보육에 관한 특허, 행정업무 및 사무관리 지원

제3장 입주자 선정 및 관리

제10조(입주자격) ① 본 센터에 입주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개정 2016.02.15., 2017.11.27.)

1. 창업 후 3년 이내인 중소기업
2. 본 센터 입주 후 3개월 이내에 창업이 가능한 예비창업자

3. 특허(등록)를 보유한 대표자(신설 2017.11.27.)

제11조(시설이용) 본 센터에 입주한 자는 본 대학의 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창업보육센터운영세칙에 따로 정한다.

제12조(입주신청) ① 입주자의 모집은 공개적으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입주시기는 수시 모집으로 할 수 있다.

② 센터에 입주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1. 입주신청서 1부
2. 사업계획서 1부

제13조(입주기간 및 연장) ① 본 센터에 입주기간은 입주 개시일로부터 1년을 원칙으로 하며, 소정의 심사과정을 거친 후 1년 단위로 2회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단, 첨단기술업종 등 장기보육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입주기업의 경우 2년 범위 내에서 추가로 연장 가능하다.

② 창업지원법에 의해 전체 면적의 20%이내에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 3년간 입주기간을 연장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7.11.27.)

제14조(입주계약의 체결) 입주승인을 통보 받은 자는 7일 이내에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15조(입주자 부담금) ① 본 센터 입주자는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거 보육실 임대료(전기·수도료, 세콰사용료, 인터넷 포함), 시설 및 장비사용료, 행정 부담금, 세미나 비용 등 부가서비스 경비를 부담하여야 하며, 사용료 기준 및 징수방법은 따로 정한다.(개정 2017.11.27.,2018.7.1.)

② 본교 교수창업으로 창업보육센터 입주시 창업활성화를 위하여 임대료의 50%를 감면한다.(신설 2018.6.26.)

제16조(책임, 손해배상, 보험) ① 입주업체와 그 참여인력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인적, 물적 손해에 대해 본 센터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② 입주업체와 그 참여인력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입주시설 및 장비, 화재에 대한 훼손은 입주업체가 배상하여야 한다.(개정 2017.11.27.)

③ 본 센터는 입주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관련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당해 보험료의 일부를 입주업체에게 부담하여 부담시킬 수 있다.

제17조(중간평가) ① 본 센터는 입주자에 대한 행정지원과 정보제공 등을 위한 중간평가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요구할 수 있다.

1. 기업경영 현황 자료
2. 기술개발에 대한 자료
3. 기타 본 센터가 입주기업의 지원을 위해 필요로 하는 사항
4. 입주 업체 중간 평가는 연장 심사로 대체할 수 있다.

제18조(변경승인) ① 입주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사유 받

생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본 센터에 변경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7.11.27.)

1. 상호 및 대표자 변경
2. 기술개발 또는 시제품 제작 품목

제19조(기부금) ① 입주업체는 입주시 아래의 소정금액 이상의 기부금을 납부할 수 있다. 다만 본 교 교수 및 대학(원) 재학생은 창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기부금을 면제한다. (개정 2013.12.16., 2016.02.15.,2017.11.27.)

구 분	10평 이하	20평 이하	20평 초과	비 고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② 본 센터는 입주업체의 지원 및 장학금 지급을 위하여 업체에서 납부한 기부금의 일부를 사용할 수 있다.

③ 입주업체는 ①항의 규정과는 별도로 이익금의 일정 비율을, 본 센터와 상호 협의하여 추가로 창업보육센터 기부금으로 출연할 수 있다.(개정 2017.11.27.)

④ 기 납부된 기부금에 대해서는 반환하지 않는다.

제4장 졸업 및 퇴거

제20조(졸업) 보육사업 지원에 의하여 계획된 기술개발 또는 시제품 제작, 자립 가능단계에 도달하였을 경우에는 졸업한다. 또한, 졸업 업체는 창업보육센터의 졸업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다.

제21조(퇴거) ① 입주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주계약기간 만료일 이전이라도 입주계약을 해지하고 입주자를 퇴거시킬 수 있다. (개정 2013.12.16., 개정 2016.02.15)

1. 창업전망이 불투명하거나 사업계획서상의 사업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2. 기타 보육사업 목적에 부합되지 않거나 사업의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본 센터 입주계약서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4. 보육실 임대료, 전기·수도료, 시설 및 장비사용료, 행정분담금 등의 경비를 3개월 이상 미납하였을 경우
5. 국세 및 지방세 체납, 부도 등으로 인한 강제집행, 파산, 화의개시, 회사정리 개시 또는 경매 절차 개시 통지를 받은 경우
6. 입주 후 3개월 이내에 창업하지 않은 경우
7. 기타 운영위원회에서 부적합하다고 인정된 경우

제5장 사후 관리

제22조(졸업자 지원) 본 센터 졸업자(업체)는 상호 협의하에 지원 받을 수 있다. 본 센터는 졸업자(업체)에 대한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위한 방법으로 자금지원, 경영지원 및 기술지원을 행한다.

제6장 교수 및 대학(원)생 창업지원

제23조(입주자격) 본 센터에 입주하고자 하는 교수 및 대학(원)생 창업입주자의 자격은 본 대학교 소속 학생으로 구성된 창업자 또는 예비창업자이어야 한다.

제24조(입주심사 가점부여) 교수 및 대학(원)생 창업입주자에 대한 입주 심사시 가점(5점)을 부여한다.

제25조 (삭제 2013.12.16)

제7장 보칙 및 준용

제26조(신의성실의 원칙) 본 센터와 입주자는 상호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사업 수행 및 지원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27조(보칙) 본 센터의 운영세칙은 운영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28조(준용) 본 규정에 정해져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창업보육사업 지원기관 운영지침 등의 관련법령을 준용한다.

부 칙

① (시행일) 본 규정은 2010년 3월 12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본 규정 제정 이전에 이미 확정되어 진행된 사항은 종전의 규정 또는 지침에 따른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1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1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이 규정 개정 이전 산학협력단의 확정 진행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해 진행된 것으로 본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6월 26일부터 시행한다.